

력이 10% 상승된다고 봐도 되겠네요?
○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글썸, 반드시 직결된 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니다.

○ 鄭海純委員 아니, 기업체 인력 고용창출도 10%든 어떻게든 줄여 나가고 공무원도 줄여 나가고 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지므로 해서 실업자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? 노는 사람이 많으면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겠네요?

○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저희들이 과다한 인력을 쓰고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실사를 해서 한다는 뜻이지 10%를 딱 못을 박아서 그대로 감축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.

○ 李康珍委員 그러니까 지금 선배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자꾸만 본질을 비켜 나간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바로 그런 것입니다.

실장님께서 자꾸 10명을 증원했다, 순증원은 사실은 얼마 안 된다라는 말씀을 자꾸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이야기가 길어졌다고 생각되거든요? 결국은 있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, 있는 공무원들을 잘 활용해도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증원을 해야 된다, 그게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? 그렇죠?

○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그렇습니다.

○ 李康珍委員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우리 사회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숫자가 많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검토결과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나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? 그런 것 아닙니까?

그렇게 본다면 급변에 공무원을 늘린다는 부분들이 자꾸만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을 발의하시면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데 지금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? 결국은.

議會에서 3대 議會부터 지금까지 죽 議員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모자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? 의회에서 먼저 요구를 한 것이죠?

○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물론입니다.

○ 李康珍委員 그러면 그것은 공무원숫자를 늘리는데 주안점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어떻게 하면 議員들이 의정활동을

하는데 지원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아닙니까?

○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그렇습니다.

○ 李康珍委員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증원이 불가피해진 것이고.....

○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그렇습니다.

○ 李康珍委員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될 것들 가지고 자꾸만 순증원은 10명이다, 사실은 뭐.....

○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늘어난 데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 경위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.

○ 李康珍委員 이상입니다.

○ 委員長 黃仁明 네, 참고로 말씀드리면 市議會 專門委員會에 5급행정직 배치하는 강원도에서는 이미 96년도 7월 1일자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. 鄭海純委員님 이해하신다면 이 안건을 의결하려고 그러는데.....

○ 鄭海純委員 네.

○ 委員長 黃仁明 그러면 서울特別市長이 제안한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金信浩委員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, 이의 없습니까?

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

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은 서울特別市長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金信浩委員 외 1인의 委員이 수정제안하신 修正動議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
(議事棒 3打)

(參 照)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2호중 “221명”을 “223명”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중 “2,554명”을 “2,583명”으로, 동조

<p>제2호중 “197명”을 “223명”으로, 동조제3호중 “5,733명”을 “5,743명”으로, 동조제4호중 “9,754명”을 “9,715명”으로 한다.</p> <p>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를 드리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까. 별도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(報告) 地下鐵 建設財源 支援</p>
<p>2. 서울特別市法律顧問運營條例案(申垞植議員外 12人 發議)</p> <p>3. 서울特別市立法·法律顧問運營條例案(李容富·鄭水華議員外 42人 發議) (12時 33分)</p> <p>○委員長 黃仁明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法律顧問運營條例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特別市立法·法律顧問運營條例案을 일괄 상정합니다. (議事棒 3打)</p> <p>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은 유사한 안건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다음 회기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이 어떻습니까? (「이의 없습니다」하는 위원 있음)</p> <p>네,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法律顧問運營條例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特別市立法·法律顧問運營條例案은 다음 회기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(議事棒 3打)</p> <p>○委員長 黃仁明 企劃管理室長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企劃管理室長 都明正 企劃管理室長입니다. 우리 市의 현안사항의 하나인 지하철 건설 재원에 대한 국고보조문제, 그리고 지방재정관련제도의 개선, 시내버스 교통세 감면, 삼풍사고 보상재원 국고지원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6일에 趙 淳 서울市長께서 財政經濟院長官을 만나 뵈고 지원 협조를 요청한 바 있고 그때 政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. 우리 企劃管理室에서는 市長께서 하신 이러한 노력과 함께 이에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 市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靑瓦臺, 總理室, 中央 各 部處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각 室·局과 함께 계속해 나가도록 하고,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</p>	<p>1. 제2기 地下鐵建設費의 國庫補助 擴大</p> <p>서울시의 제2기 지하철건설 재원조달에 대한 관계부처 합의회 2단계 시내구간은 총건설비의 25%를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으므로 용자금으로 지원된 3,540억원을 국고보조로 전환하고, '98이후 건설비에 대한 국고보조는 50%까지 확대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□'90.12.5. 國務總理 主宰下에 서울시 제2기 地下鐵建設 財源調達과 關聯하여 關係部處(총리실, 경제기획원, 건설부, 서울시)간의 승의가 있었음. ○1단계 구간(47km)의 건설비용은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고, ○2단계 시내구간(103km)은 총건설비의 25%를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음.</p> <p>□그러나 실제 2단계 市內區間에 대한 政府補助는 '96년까지 總投資費의 18%에 불과하여 建設財源調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 ○'96년까지 총투자비: 3조 9,168억원 ○'96년까지 정부보조지원: 7,100억원(총투자비의 18%) ○'96년도까지 정부용자금: 3,540억원(총투자비의 9%)</p> <p>□서울시 제2기 地下鐵 2단계 市內區間 建設費의 融資金은 實質的인 政府支援이라 할 수 없으므로 國庫補助金으로 轉換하고 '98 이후 建設費에 대한 國庫補助를 建設費의 50%까지 擴大하여 支援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2. 제3기 地下鐵建設費의 50% 國庫補助</p> <p>서울의 지하철은 수도권 주민 2,020만 명이 이용하는 국가적 기간시설이므로 조속한 건설이 필요하나, 과도한 지하철부채를 안고 있는 서울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제3기 지하철 건설은 정부지원의 확대가 필수적이</p>